

절전의 법적 근거

1.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제21조에 의하면 전기의 수급 조정을 하지 아니하면 전기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악 영향을 미치고 공공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사용 전력량의 한도, 사용 최대 전력의 한도, 용도 또는 사용을 성지하여야 되는 일시를 정하여 일반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전 전력의 용량 한도를 정하여 일반 전기사업자로부터의 수전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절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 그러나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강제적 방법에 의한 절전이 중요하기는 하나 전세계 조류가 에너지난 타개를 위하여 법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에 있고 부존 자원 자체가 부족한 우리나라 형편에 비추어 우리 개인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절약이 제2의 생산이라 눈길로 간을 내 세우고 절전 나아가서 모든 물자 절약을

중요 시책으로 결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 추진에 적극 호응하여야 하겠다.

2. 절전에 관한 시행 법령

부고시 제77-17호를 제정 공포하여 전기의 사용 제한 기준 및 제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현실적인 절전 단속에 임하고 있다. 등 고시의 주요 내용은 P. 14의 표와 같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제21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거 상공부령(현재 동력자원부령)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상공부령)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제 25조의 2에는 전기의 사용을 제한할 전기 시설물과 제한 대상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 상공부고시 제77-17호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 행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공

○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제 187의 2에 의하면 조명용 전등 절멸장치를 원천적으로 전등의 부분 절멸이 가능하도록 시설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절전의 이행이 용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절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 국부 조명 설비는 등기구마다 절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③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기시설물	대상장소
1. 일반 조명등	사무실, 접객업소, 기타 공공시설
2. 장식용 조명등	상점, 백화점, 접객업소
3. 진열장의 조명 설비	상점, 백화점 기타 결본 전시장
4. 광고 등, 네온싸인 및 광고 선전용 투광기	옥내외 설치 장소
5. 경기용 야간 조명 설비	운동장, 경기장
6. 판매용 전기기계 기기	상점, 백화점 기타 결본 전시장
7. 에레베이터	호텔, 백화점 기타 에레베이터 설치 장소

여러 개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 전등군의 등개 수는 6개 이내로 한다.

다면 국장의 관객석, 역사의 내합실 등 일시에 군중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체의 조명 설비를 동시에 점

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기 사용의 제한 기준 및 방법 ◆

대상 전기 시설물	대상 장소	제한 기준 (최고허용 조도)	제한 방법	환산 기준(단위 면적 4평당 m ² 당 전동소요전력) 형광등 백열등
1. 일반조명등	가. 사무실(다면, 설계, 제도, 계산 등 정밀작업을 요하는 장소는 제외)	200룩스(전등으로부터 2m 거리의 조도로 함.)	제한 기준 초과	30와트 100와트
	나. 상점, 백화점의 점포(다면, 점포내에서 시계 수리 등 세공 작업을 위한 국부 조명을 요하는 장소는 제외)	300룩스(")	"	40 " 120 "
	다. 이용실, 미용실	"	"	40 " 120 "
	라. 전자호 이화의 접객업소 및 공공시설	150룩스(")	"	20 " 60 "
2. 장식용 조명등	상점, 백화점, 접객업소	-	사용 금지	
3. 진열장의 조명등	상점, 백화점, 기타 전시장	300룩스(진열품 표면의 조도로 함)	제한 기준 초과 사용 금지	40 " 120 "
4. 광고선전용 전등 가. 광고등	옥내 외의 설치 장소	1업소 1광고등으로 하고 소요 전력은 200와트 이내로 함.	제한 기준 초과 사용 금지	
나. 네온싸인	"	-	사용 금지(다면, 병원의 '병원' '약국' 표지 등은 제외하되 약국과 관광호텔은 일몰시 이후부터 24:00시 이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 투광기	"	-	사용금지	
5. 경기장 야간 조명 설비	운동장, 경기장 (옥내 경기장은 제외)	-	사용 금지(다면, 문교부·체육관의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는 제외)	
6. 판매용 전기 기계 기구	상점, 백화점 기타 전시장	-	사용 금지	
7. 예레베이터	호텔, 백화점 기타 설치 장소		○예레베이터는 3층 이하 운행 금지, 4층 이상 격층제운행. (다면, 병원, 관광호텔은 제외)	